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11호
2019. 2. 11.(월)

차 례

고 시(1)

- 도시관리계획(학댕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9-18호) ·····2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41호) ·····1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8호

도시관리계획(학댕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1-2번지(학댕이어린이공원), 오정동 382-3번지(봉촌어린이공원), 신탄진동 21번지(신탄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보로 지역 소통의 장 및 주민 휴식, 어린이들의 문화향유와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학댕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학댕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학댕이어린이공원

1.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	-	학댕이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촌동 461-2	1,505.8	대전광역시 고시 88호 (1998. 6. 13.)	

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댕이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12.9㎡ ○ 녹지면적 : 감) 12.9㎡	○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1.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05.8	1,505.8		-	-	-	-	-	-	
시 설	806.2	819.1	증 12.9	-	-	-	-	-	-	
녹 지	699.6	686.7	감 12.9	-	-	-	-	-	-	

1.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05.8	1,505.8		100	-	-	-	-	-	-	
계		806.2	819.1	증 12.9	54.40	-	-	-	-	-	-	
기반시설	소계	469.9	318.9	감 151.0	21.18	-	-	-	-	-	-	
	도로	110.7	243.0	증 132.3	16.14	-	-	-	-	-	-	
	광장	359.2	75.9	감 283.3	5.04	-	-	-	-	-	-	
조경시설		-	-		-	-	-	-	-	-	-	
휴양시설		38.9	24.9	감 14.0	1.65	-	-	-	-	-	-	
유희시설		129.1	439.2	증 310.1	29.17	-	-	-	-	-	-	
운동시설		168.3	36.1	감 132.2	2.40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699.6	686.7	감 12.9	45.60	-	-	-	-	-	-	

1.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 닥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증 · 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05.8	1,505.8	-	42	36	-	-	-	-	-	-	
시설소계			806.2	819.1	증 12.9	-	-	-	-	-	-	-	-	
기반시설		소 계	469.9	318.9	감 151.0	-	-	-	-	-	-	-	-	
		산 책 로	110.7	243.0	증 132.3	-	-	-	-	-	-	-	-	
		광 장 (소 계)	359.2	75.9	감 283.3	-	-	-	-	-	-	-	-	
	가-1	진 입 광 장 1	154.3	61.3	-	-	-		-	-	-	-	-	
	가-2	진 입 광 장 2	86.0	14.6	-	-	-	-	-	-	-	-	-	
	가-3	중 앙 광 장	118.9	-	-	-	-	-	-	-	-	-	-	
조경시설		소 계	-	-	-	2	3	-	-	-	-	-	-	
	①	파 고 라	-	-	-	2	-	-	-	-	-	-	-	
	①	조 형 파 고 라	-	-	-	-	2	-	-	-	-	-	-	
	②	장 식 가 벽	-	-	-	-	1	-	-	-	-	-	-	
	③	플 랜 터	-	-	-	-	(1식)	-	-	-	-	-	-	
휴양시설		소 계	38.9	24.9	감 14.0	12	11	-	-	-	-	-	-	
	나-1	휴 게 공 간 1	19.7	14.3	-	-	-	-	-	-	-	-	-	
	나-2	휴 게 공 간 2	19.2	10.6	-	-	-	-	-	-	-	-	-	
	②④	평 의 자	-	-	-	4	4	-	-	-	-	-	-	
	③⑤	등 의 자	-	-	-	8	6	-	-	-	-	-	-	
	⑥	앉 음 벽	-	-	-	-	1	-	-	-	-	-	-	
유희시설		소 계	129.1	439.2	증 310.1	12	5	-	-	-	-	-	-	
	다	어린이놀이터	129.1	439.2	-	-	-	-	-	-	-	-	-	
	⑦	언덕슬라이드	-	-	-	-	1	-	-	-	-	-	-	
	④	시 소	-	-	-	2	-	-	-	-	-	-	-	
	⑧	그 네	-	-	-	-	1		-	-	-	-	-	
	⑨	트 램 폴 린	-	-	-	-	1	-	-	-	-	-	-	
	⑤⑩	흔 들 놀 이 대	-	-	-	2	2	-	-	-	-	-	-	
	⑥	조 합 놀 이 대	-	-	-	1	-	-	-	-	-	-	-	
	⑦	무 지 개 터 널	-	-	-	7	-	-	-	-	-	-	-	
운동시설		소 계	168.3	36.1	-	4	5	-	-	-	-	-	-	
	라	운 동 공 간	168.3	36.1	감 132.2	-	-	-	-	-	-	-	-	
	⑧⑪	체력단련시설	-	-	-	4	5	-	-	-	-	-	-	
관리시설		소 계	-	-	-	12	12	-	-	-	-	-	-	
	⑫	종 합 안 내 판	-	-	-	-	1	-	-	-	-	-	-	
	⑨	공원이용안내판	-	-	-	1	-	-	-	-	-	-	-	
	⑬	시설이용안내판	-	-	-	-	1	-	-	-	-	-	-	
	⑩⑭	공 원 등	-	-	-	8	8	-	-	-	-	-	-	
	⑪⑮	C C T V	-	-	-	1	1	-	-	-	-	-	-	
	⑫⑯	점 멸 기	-	-	-	1	1	-	-	-	-	-	-	
	⑬	문 주	-	-	-	1	-	-	-	-	-	-	-	
	⑭	휀 스	-	-	-	(73경간)	-	-	-	-	-	-	-	
녹 지			699.6	686.7	감 12.9	-	-	-	-	-	-	-	-	

1.6 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 로	기정		1	4.4	6.4	28.4	진입로	공원북서측경계	중앙광장	
	변경		1	2.0	15.2	30.4	진입로	공원서측경계	어린이놀이터	
	기정		2	3.2	17.3	55.2	연결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	
	변경		2	2.0	5.3	10.6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1	
	기정		3	1.8	11.7	21.1	연결로	중앙광장	진입광장1	
	변경		3	2.0	94.2	188.3	진입로	공원서측경계	진입광장2	
	기정		4	1.0~1.5	4.4	6.0	진입로	공원남측경계	중앙광장	
	변경		4	2.0	6.8	13.7	연결로	공원남측경계	산책로3	
총 계	기정				39.8	110.7				
	변경				121.5	243.0				

□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봉촌어린이공원

2.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	-	봉촌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정동 382-3	1,653	건설부 고시 84호 (1972. 11. 6.)	

2.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봉촌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585.40㎡ ○ 녹지면적 : 감) 585.40㎡	○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2.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653	1,653		82.56	82.56	-	142.57	142.57	-	
시 설	402.6	988.00	증 585.4	82.56	82.56	-	142.57	142.57	-	
녹 지	1,250.40	665.00	감 585.4	-	-	-	-	-	-	

2.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653.00	1,653.00	-	100.00	82.56	82.56	-	142.57	142.57	-	
계		402.60	988.00	증 585.40	59.77	82.56	82.56	-	142.57	142.57	-	
기반시설	소계	184.04	756.44	증 572.40	45.76	-	-	-	-	-	-	
	도로	-	248.00	증 248.00	15.00	-	-	-	-	-	-	
	광장	184.04	508.44	증 324.40	30.76	-	-	-	-	-	-	
휴양시설		82.56	82.56	-	4.99	82.56	82.56	-	142.57	142.57	-	
유희시설		136.00	119.00	감 17.00	7.2	-	-	-	-	-	-	
운동시설		-	30.00	증 30.00	1.82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1,250.40	665.00	감 585.40	40.23	-	-	-	-	-	-	

2.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 닥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증 · 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653	1,653	-	34	41	82.56	82.56	-	142.57	142.57	-	
시설소계			402.60	988.00	증 585.40	-	-	82.56	82.56	-	142.57	142.57	-	
기반시설		소 계	184.04	756.44	증 572.40	-	-	-	-	-	-	-	-	
		도 로	-	248.00	증 248.00	-	-	-	-	-	-	-	-	신설
	가	광 장	184.04	-	감 184.04	-	-	-	-	-	-	-	-	삭제
	가-1	진 입 광 장 1	-	254.00	증 254.00	-	-	-	-	-	-	-	-	신설
	가-2	진 입 광 장 2	-	155.44	증 155.44	-	-	-	-	-	-	-	-	신설
	가-3	중 앙 광 장 1	-	65.00	증 65.00	-	-	-	-	-	-	-	-	신설
	가-4	중 앙 광 장 2	-	34.00	증 34.00	-	-	-	-	-	-	-	-	신설
휴양시설		소 계	82.56	82.56	-	8	22	-	-	-	-	-	-	
	나	경 로 당	82.56	82.56	-	-	-	82.56	82.56	-	142.57	142.57	-	
	①	파 고 라	-	-	-	1	-	-	-	-	-	-	-	삭제
	②	평 상	-	-	-	2	-	-	-	-	-	-	-	삭제
	③	평 의 자	-	-	-	5	-	-	-	-	-	-	-	삭제
	①	정 자	-	-	-	-	1	-	-	-	-	-	-	신설
	②	쉘 터	-	-	-	-	1	-	-	-	-	-	-	신설
	③	플 랜 터	-	-	-	-	2	-	-	-	-	-	-	신설
	④	앉 음 벽	-	-	-	-	7	-	-	-	-	-	-	신설
	⑤	등 의 자	-	-	-	-	11	-	-	-	-	-	-	신설
유희시설		소 계	136.00	119.00	감 17.00	2	6	-	-	-	-	-	-	
	다	어린이놀이터	136.00	119.00	감 17.00	-	-	-	-	-	-	-	-	변경
	④ ⑥	조 합 놀 이 대	-	-	-	1	1	-	-	-	-	-	-	
	⑤ ⑦	시 소	-	-	-	1	1	-	-	-	-	-	-	
	⑧	흔 들 놀 이 대	-	-	-	-	3	-	-	-	-	-	-	신설
	⑨	바 구 니 그 네	-	-	-	-	1	-	-	-	-	-	-	신설
운동시설		소 계	-	30.00	증 30.00	18	5	-	-	-	-	-	-	
	라	체 력 단 련 장	-	30.00	증 30.00	-	-	-	-	-	-	-	-	신설
	⑥ ⑩	체 력 단 련 시 설	-	-	-	17	5	-	-	-	-	-	-	변경
	⑦	농 구 대	-	-	-	1	-	-	-	-	-	-	-	삭제
관리시설		소 계	-	-	-	6	8	-	-	-	-	-	-	
	⑧ ⑪	간 판 석	-	-	-	1	1	-	-	-	-	-	-	
	⑫	종 합 안 내 판	-	-	-	-	1	-	-	-	-	-	-	신설
	⑨ ⑬	공원이용안내판	-	-	-	1	1	-	-	-	-	-	-	
	⑩ ⑭	폐쇄회로텔레비 젼	-	-	-	1	1	-	-	-	-	-	-	
	⑪ ⑮	공 원 등	-	-	-	3	4	-	-	-	-	-	-	변경
녹 지			1,250.4	665.00	감 585.40	-	-	-	-	-	-	-	-	

2.6 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 로	신설	3	1	2.0	7.0	14.0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1	
	신설	3	2	2.0	18.0	36.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신설	3	3	3.5	1.0	5.0	연결로	산책로1	소로3-4	
	신설	3	4	1.2	23.0	27.0	진입로	부지동측	경로당	
산책로	신설		1	1.8	93.0	166.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총 계	신설				142.0	248.0				

□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신탄어린이공원

3.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	-	신탄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탄진동 21	2,015	건설부 고시 51호 (1982. 2. 19.)	

3.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탄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167.5㎡ ○ 녹지면적 : 감) 167.5㎡	○ 낙후된 시설 재정비

3.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15	2,015	-	15	15	-	15	15	-	
시 설	955.8	1,123.3	증 167.5	15.0	15.0	-	15.0	15.0	-	
녹 지	1,059.2	891.7	감 167.5	-	-	-	-	-	-	

3.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15.0	2,015.0	-	100.0	15.0	15.0	-	15.0	15.0	-	
계		955.8	1,123.3	증 167.5	58.0	15.0	15.0	-	15.0	15.0	-	
기반시설	소계	655.0	696.7	증 41.7	34.5	-	-	-	-	-	-	
	도로	191.2	330.9	증 139.7	16.4	-	-	-	-	-	-	
	광장	463.8	365.8	감 98.0	18.1	-	-	-	-	-	-	
휴양시설		56.4	88.8	증 32.4	4.4	-	-	-	-	-	-	
유희시설		201.5	222.3	증 20.8	11.0	-	-	-	-	-	-	
운동시설		-	81.6	증 81.6	4.1	-	-	-	-	-	-	
편익시설		42.9	33.9	감 9.0	1.7	15.0	15.0	-	15.0	15.0	-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1,059.2	891.7	감 167.5	44.3	-	-	-	-	-	-	

3.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 닥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증 · 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15	2,015	-	33	52	15.0	15.0	-	15.0	15.0	-	
시설소계			955.8	1,123.3	증 167.5	33	52	15.0	15.0	-	15.0	15.0	-	
기반시설		소 계	655.0	696.7	감 41.7	-	-	-	-	-	-	-	-	
		도 로	191.2	330.9	증 139.7	-	-	-	-	-	-	-	-	
		광 장	463.8	365.8	감 98	-	-	-	-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휴양시설		소 계	56.4	88.8	증 32.4	12	19	-	-	-	-	-	-	
		휴 게 공 간	42.9	88.8	증 45.9-	-	-	-	-	-	-	-	-	
		정 자	13.5	-	-	1	-	-	-	-	-	-	-	
		디자인파고라	-	-	-	-	1	-	-	-	-	-	-	
		파 고 라	-	-	-	1	1	-	-	-	-	-	-	
		평 의 자	-	-	-	10	5	-	-	-	-	-	-	
		등 의 자	-	-	-	-	4	-	-	-	-	-	-	
		조 형 벤 치	-	-	-	-	2	-	-	-	-	-	-	
		하트통돌벤치	-	-	-	-	5	-	-	-	-	-	-	
		흔 들 벤 치	-	-	-	-	1	-	-	-	-	-	-	
유희시설		소 계	201.5	222.3	증 20.8	4	5	-	-	-	-	-	-	
		놀 이 공 간	201.5	222.3	-	-	-	-	-	-	-	-	-	
		조 합 놀 이 대	-	-	-	1	1	-	-	-	-	-	-	
		그 네	-	-	-	1	1	-	-	-	-	-	-	
		놀 이 기 구	-	-	-	2	-	-	-	-	-	-	-	
		흔 들 놀 이	-	-	-	-	3	-	-	-	-	-	-	
운동시설		소 계	-	81.6	-	4	4	-	-	-	-	-	-	
		운 동 공 간	-	81.6		-	-							
		운 동 시 설 물	-	-	-	3	4	-	-	-	-	-	-	
		농 구 대	-	-	-	1	-	-	-	-	-	-	-	
편익시설		소 계	42.9	33.9	감 9.0	2	2	15.0	15.0	-	15.0	15.0	-	
		화 장 실	30.1	30.1	-	1	1	15.0	15.0	-	15.0	15.0	-	
		음 수 대	12.8	3.8	감 9.0	1	1	-	-	-	-	-	-	
관리시설		소 계	-	-	-	11	22	-	-	-	-	-	-	
		공 원 등	-	-	-	3	7	-	-	-	-	-	-	
		C C T V	-	-	-	1	1	-	-	-	-	-	-	
		공 원 안 내 판	-	-	-	1	1	-	-	-	-	-	-	
		시 설 안 내 판	-	-	-	2	3	-	-	-	-	-	-	
		표 석	-	-	-	1	1	-	-	-	-	-	-	
		제 어 기	-	-	-	1	1	-	-	-	-	-	-	
		계 단	-	-	-	2	2	-	-	-	-	-	-	
		수 목 투 사 등	-	-	-	-	6	-	-	-	-	-	-	
녹 지			1,074.2	891.7	감 167.5	-	-	-	-	-	-	-	-	

3.6 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 로	기정	3	1	6.1	2.7	16.5	진입로	서측입구	휴게공간2-1	
	변경	3	1	6.2	8.8	55.0	진입로	서측입구	소로3-7	
	기정	3	2	4.0	4.0	16.0	진입로	북측입구	광장1-1	
	변경	3	2	3.8	3.5	13.3	진입로	북측입구	광장1-1	
	기정	3	3	6.0	6.3	37.8	진입로	동측입구	소로3-5	
	변경	3	3	4.8~5.4	8.3	40.3	진입로	동측입구	광장1-1	
	기정	3	4	3.7	8.9	32.9	진입로	남측입구	광장1-1	
	변경	3	4	4.8~6.6	8.4	46.2	진입로	남측입구	광장1-1	
	기정	3	5	2.0	44.0	88.0	연결로	광장1-1	광장1-1	
	변경	3	5	1.5~2.8	47.2	81.4	연결로	소로3-3	광장1-1	
	기정	3	6	-	-	-	-	-	-	
	신설	3	6	6.7	2.5	16.3	연결로	화장실	소로3-5	
	기정	3	7	-	-	-	-	-	-	
	신설	3	7	2.3~3.3	36.0	78.4	연결로	광장1-1	광장1-1	
총 계					114.7	330.9				

□ 관계도면 : 게재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의2)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전화:042-608-6765, FAX:042-608-383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은영(☎ 042-608-67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의2)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19. 2. 11. ~ 3. 4.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 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5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원 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이 은 영
연 락 처	(042) 608-6765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